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안내

THE **EST**

춘천 | 동문 디 이스트

어 반 포 레

■ 청약 일정

구분	신청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5.08.04.(월)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건본주택 방문 청약(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59	84A	84B	84C	84D	합계
다자녀가구	3	42	7	2	2	56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청약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수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자녀 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 미 적용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 수(태아나 입양 포함)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강원특별자치도)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의사항

(1)(2):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고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모두 당첨된 경우 신청 접수일시(분단위)가 빠른 당첨권(접수일시)이 같은 연령(연월일 계산)이 유효하고 높은 당첨권은 무효처리함.

-청약신청자 본인은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함.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작물은 제작과정에서 오류·요기기가 있을 수 있으나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접수 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